아틀리에 933'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

주택형별 공급세대

구분	74A	합계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6	6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 및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기준 • **공급기준**

구분	공급 비율	소득기준	경쟁발생 시 우선순위
우선공급	50%	130%이하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인 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일반공급	20%	160%이하	
추첨제	30%	160%초과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내용은 청약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청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배포자료는 작업 및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아틀리에 933'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및 자신보유기준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 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산보유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 표준액,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 지방지치단체장 결정 가액
		토지	•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에 따른 초지(소유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등)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 또는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산입증 제출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공통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추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①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주민센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집합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 (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